#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제63호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이 2007년 3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통과되어 현재 공포하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중화인민공화국주석 후진타오 2007년 3월 16일

##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기업과 소득을 취득하는 기타조직(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하며 본 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독자기업 및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 기업은 거민기업(이하 '거주자기업'이라 한다)과 비거민기업(이하 '비거주자기업'이라 한다)으로 분류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거주자기업이라 함은 법률에 의거 중국 경내에서 설립되었거나, 외국(지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실제관리기구가 중국 경내에 있는 기업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말하는 비거주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지역)의 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그실제관리기구가 중국 경내에 없지만,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였거나, 또는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으나 중국 경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기업을 가리킨다.

**제3조** 거주자기업은 중국 경내, 경외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경우, 그 기구 및 장소가 취득한 중국 경내의 원천소득 및 중국 경외에서 발생했으나 그가 설립한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당해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중국 경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25%로 한다.

비거주기업이 본 법 제3조 제3관에 규정한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 세율은 20%로 한다.

## 제2장 과세표준

제5조 기업의 매 사업연도의 수입총액에서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각종 비용공제 및 공제가능한 이전연도 결손금의 보전 후 잔액을 과세대상소득액(이하 '과세표준'이라한다)으로 한다.

**제6조** 기업이 화폐형식과 비화폐형식으로 각종 소득원천으로부터 취득한 수입을 수입총액이라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一) 화물(이하 '재화'라 한다)판매수입
- (二) 노무(이하 '용역'이라 한다)제공수입
- (三) 재산양도수입
- (四) 배당, 분배 등 권익성(이하 '지분성'이라 한다) 투자수익
- (五) 이자수입
- (六) 임대료수입
- (七) 특허권사용료수입
- (八) 수증수입
- (九) 기타수입.

제7조 수입총액 중에서 아래에 열거한 수입은 비과세수입으로 한다.

- (一) 재정보조금
- (二) 법률에 따라 수취하여 재정관리로 납입되는 행정사업성 수수료 및 정부성 기금
  - (三)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비과세수입

제8조 기업에서 실제 발생하고, 취득한 수입과 관련이 되는 합리적인 지출로서 원가, 비용, 세금, 손실 및 기타지출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제9조 기업에서 발생한 공익성 기부금 지출로서, 사업연도 이윤총액의 12% 범위 내의 금액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 과세표준 계산 시 아래에 열거하는 지출은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 (一) 투자자에게 지급한 배당, 분배 등 지분투자수익 대금
- (二) 기업소득세 세액
- (三) 조세체납금

- (四) 벌금 및 과태료와 몰수당한 재화의 손실
- (五) 본 법 제9조에서 규정한 것 외의 기부금 지출
- (六) 찬조지출
- (七) 심사승인을 거치지 않은 준비금 지출
- (八) 취득한 소득과 무관한 기타지출

**제11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업이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아래에 열거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 (一) 주택, 건축물 이외 아직 사용에 투입되지 아니한 고정자산
- (二) 운용리스방식으로 리스한 고정자산
- (三) 금융리스방식으로 리스해 준 고정자산
- (四) 감가상각이 완료되었으나 계속 사용 중인 고정자산
- (五) 경영활동과 무관한 고정자산
- (六) 단독으로 평가하여 고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한 토지
- (七) 기타 감가상각으로 공제할 수 없는 고정자산.

제12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업이 규정에 따라 계산한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아래에 열거한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 (一) 자체개발과 관련한 지출로서 과세표준 계산시 이미 비용으로 공제한 무형자산
- (二) 자가 창출한 영업권
- (三) 경영활동과 무관한 무형자산
- (四) 기타 상각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는 무형자산.

제13조 과세표준 계산 시 기업에서 발생한 아래의 지출을 장기이연비용으로 하여 규정에 따라 상각하는 경우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 (一)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한 개량적 지출
- (二) 리스한 고정자산에 대한 개량적 지출
- (三) 고정자산에 대한 대수리 지출
- (四) 기타 장기이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출.

제14조 기업의 대외투자기간에 투자자산에 대한 원가는 과세표준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제15조** 기업이 재고자산을 사용, 판매함에 있어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재고자산 원가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 공제할 수 있다.

제16조 기업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순가치를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제17조 기업이 기업소득세를 총괄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경외 영업기구의 손실을 중국 경내 영업기구의 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제18조 기업의 과세연도 중 발생한 손실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이월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비거주자기업이 본 법 제3조 제3관에서 규정한 소득을 취득한 경우, 아래에 열거한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一) 배당 및 분배 등 지분투자수익과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수입은 그 수입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二) 재산양도수입은 그 수입총액에서 당해 재산의 순가치를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三) 기타소득은 상기에 규정된 방법을 참고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제20조 본 장에서 규정한 수입, 공제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과 자산의 세무처리방법은 국무원의 재정, 세무주관부문이 규정한다.

**제21조** 과세표준 계산시 기업의 재무 및 회계처리방법이 세수법률, 행정법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세수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 제3장 납부세액

제22조 기업의 과세표준에 적용세율을 곱하고, 본 법의 조세우혜(이하 '조세우대'라 한다)규정에 의거하여 세액을 감면하고 상계한 후의 잔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제23조 기업이 취득한 아래의 소득에 대해 이미 경외에서 소득세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당기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 한도액은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해당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으로 한다. 공제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이후 5개 사업연도 이내에 매 사업연도의 공제 한도액에서 당해연도의 공제세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一) 거주자기업의 중국 경외원천 과세소득
- (二)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고, 중국 경외에서 발생하여 취득하였으나, 단 당해 기구 및 장소와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과세소득

제24조 거주자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중국 경외 원천의 배당 및 분배 등의 지분성 투자수익을 받았을 경우 그 외국기업이 경외에서 실제 납부한 소득세 세액 중 당해소득이 부담한 부분은 당해 거주자기업의 공제 가능한 경외 소득세 세액으로서, 본 법 제23조에 규정한 공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제4장 조세우대

**제25조** 국가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산업과 항목에 대하여 기업소득세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제26조 기업의 아래에 열거하는 수입은 면세수입으로 한다.

- (一) 국채이자수입
- (二) 조건에 부합하는 거주자 기업간의 배당 및 분배 등의 지분성 투자수익
- (三)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비거주자기업이 거주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당해 기구 및 장소와 실제적 관계가 있는 배당 및 분배 등 지분성 투자수익
  - (四) 조건에 부합되는 비영리조직의 수입.

제27조 기업의 아래에 열거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 (一) 농, 임, 목, 어업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
- (二)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초시설 항목의 투자경영소득
- (三) 조건에 부합되는 환경보호,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프로젝트에 종사하고 취득한 소득
  - (四)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양도소득
  - (五) 본 법 제3조 제3관에 규정한 소득

제28조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하여는 20%의 감면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고신기술기업(이하 '하이테크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5%의 감면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

제29조 민족자치지역의 자치기관은 당해 민족자치지역의 기업이 납부할 기업소득세 중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감면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치주 및 자치현이 기업소득세의 감면을 결정하는 경우 반드시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30조 기업의 아래의 지출은 과세표준을 계산 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一) 신기술, 신상품, 신공예의 개발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용

- (二) 장애인 및 국가가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기타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공급하고 지급하는 급여.
- **제31조** 창업투자기업이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는 창업투자에 종사하는 경우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제32조 기업의 고정자산이 기술진보 등의 원인으로 확실히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상각연한을 단축하거나 가속상각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3조 기업이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국가의 산업정책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취득한 수입은 과세표준 계산시 수입을 감액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제34조** 기업이 매입하여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수자원절약 및 안전생산 등 전용설비에 사용하는 투자액은 일정비율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 제35조 본 법에 규정한 조세우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 제36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 혹은 돌발사건 등의 원인에 의해 기업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국무원은 기업소득세에 대한 특별 우대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 제5장 원천징수

- 제37조 비거주자기업이 취득하는 본 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수입에 대한 납부할 소득세는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당해 수입의 지급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회 수입을 지급하거나 기한이 되어 지급해야 하는 때에, 그지급금액 또는 기한이 되어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서 원천징수한다.
- 제38조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취득하는 공정작업과 용역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공정대금 혹은 용역비의 지급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9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본 법 제37조, 제38조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당해 소득의 발생지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법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당해 납세자에게 중국 경내의 기타 수입항목의 지급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당해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 제40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회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일로부터 7일 내에 국고에 입고하고, 소재지 세무기관에 원천징수 소득세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장 특별납세조정

제41조 기업과 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자의 과세수입 및 과세대상 소득액이 감소될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조정할 권한이 있다.

기업과 그 특수관계자가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양수한 무형자산, 혹은 공동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하여 제공받은 경우 발생한 원가는 과세표준 계산시 반드시 독립거래원칙에 따라 이를 배분해야 한다.

제42조 기업은 세무기관에 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가격결정방법과 계산방법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기업과의 협상 및 확인을 통해 동 가격결정방법에 대하여 사전 합의할 수 있다.

제43조 기업이 세무기관에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세납부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반드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연간 특수관계거래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특수관계거래를 조사하는 경우, 기업 및 그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조사와 관련 있는 기타 기업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상관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44조 기업이 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혹은 허위자료 및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여 당해 특수관계 거래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그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45조 거주자기업, 또는 거주자기업과 중국 거주자가 지배하는, 실제세율이 본 법 제4조 제1관에 규정한 세율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국가(지역)에 설립된 기업이 합리적인 경영수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분배하지 않거나 분배를 감소시키는 경우, 상술한 이윤 중에 당해 거주자기업에 귀속되어야 하는 부분을 당해 거주자기업의 당기 수입액에 산입한다.

제46조 기업이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취한 채권성 투자와 지분성 투자의 비율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자지출에 대하여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제47조** 기업이 기타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아닌 영업을 하여 그 과세수입 또는 과세대상소득액을 감소시킨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8조 세무기관이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정을 하여 세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을 보충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가산이자를 징수해야 한다.

#### 제7장 징수관리

제49조 기업소득세의 징수관리는 본 법의 규정 이외에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0조 조세법률 및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거주자기업은 기업 등기지역을 납세지로 하나, 등기지역이 경외인 경우 그 실제관리기구가 소재하는 지역을 납세지로 한다.

거주자기업이 중국 경내에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영업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총괄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51조 비거주자기업이 본 법 제3조 제2관에 규정한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기구 및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경내에 둘 또는 둘 이상의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경우, 세무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서, 그 주요기구 및 장소를 선정하여 기업소득세를 총괄 납부할 수 있다.

비거주자기업이 본 법 제3조 제3관에 규정한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52조**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간에는 기업소득세를 합병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53조 기업소득세는 과세연도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업이 한 과세연도 중에 개업하는 경우 또는 경영활동을 중지함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실제 경영기간이 12개월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실제경영기간을 하나의 과세연도로 하여야 한다.

기업이 법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그 청산기간을 하나의 과세연도로 하여야 한다.

제54조 기업소득세는 매 월 혹은 매 분기별로 예납한다.

기업은 매 월 혹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예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예납해야 한다.

기업은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세무기관에 당해 사업연도 기업소득세 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결산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다. 기업이 기업소득세 납부신고서 제출시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서와 기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55조 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경영활동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실제 경영 중지일로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당기의 기업소득세를 일괄 정산해야 한다.

기업은 취소등기를 하기 전에 그 청산소득을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 본 법에 따라 납부하는 기업소득세는 인민폐로 계산한다. 소득이 인민폐이외의 화폐로 계산된 경우, 반드시 인민폐로 환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제8장 부 칙

제 57 조 본 법을 공포하기 전에 이미 비준을 거쳐 설립된 기업이 설립 당시의 조세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낮은 세율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 법 시행으로부터 5 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본 법이 규정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기감면의 조세혜택을 누리는 경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 법 시행 후로부터 당해 정기감면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까지 계속하여 정기감면하나, 이익을 획득하지 못해 아직 정기감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정기감면 혜택기간은 본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로부터 계산한다.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외경제합작과 기술교류발전을 위한 특정지역 및 국무원이이미 규정한 상기 지역 특별정책을 집행하는 지역 내에 새로이 설립된 국가의 중점적인지원이 필요한 하이테크기업은 과도기적 조세우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국가가 이미 정한 투자장려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감면세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 58 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외국정부가 서명한 조세협정과 본 법률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9 조 국무원은 본 법률에 따라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제 60 조 본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91년 4월 9일 제 7 기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제 4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외국기업소득세법》과 1993년 12월 13일 국무원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작행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